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	------

제출년월일 : 2021.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안 제1조)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안 제7조제4항)

라. 타 조례와의 관계에 따라 정비(안 제7조제6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2. 3. ~ 12. 2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 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를 “지역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 ----- ----- ----- ----- -----</p>
<p>제3조의2(준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준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준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준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준속기한) 기금의 준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③ (생략)</p> <p>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u>일자리경제과</u> 지역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지역경제</u> ----- ----- -----</p>

⑤ (생략)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최주연 (☎3153-8573)